

러시아 담보제도 현황

1. 개관

- 舊사회주의 체제하의 담보제도는 사적 소유권 제한으로 제한적인 질권만 존재 →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담보제도 정비 필요성
- 1990년 구소연방 민법에서 본격적으로 담보제도 규정, 1992년 러시아 연방 담보법 제정
- 1994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민법은 제1장(채무이행의 담보)에서 보증, 은행보증 등 담보에 대해서 규정
 - 민법은 담보권을 대인적 권리로써 채무자로부터의 우선변제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취급
- 1992년 제정된 담보법은 민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 민법은 채권담보 등에 대해 규정이 불충분 → 1998년 7월 특별법으로서 지당법 제정, 시행
- 참고로, CIS국가중 카자흐스탄 민법은 러시아 민법을 기초로 하였고, 담보법에도 공통된 부분이 많으며,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등에도 담보법이 있는 바, 이들은 러시아의 1992년 담보법과 유사

2. 담보제도 주요 내용

가. 담보권의 종류와 목적물

- 담보권은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임
- 1992년 담보법 주요 내용
 - 담보목적물은 법률에 기초하여 담보권설정자가 처분권을 가지는 모든 재산이며, 기업, 건조물, 시설, 아파트, 운수·교통수단, 우주위성 등임

- 저당권은 이중 기업,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이며, 항공기, 선박 등 운수·교통수단은 담보목적물은 되나 저당권 설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로 동산을 주로 담보목적물로 함
 - 동산 이외의 채권,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는 질권과 비교하여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 유통·가공과정에 있는 상품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미치게 됨

o 1994년 민법 주요 내용

- 담보목적물을 개별적으로 열거한 1992년 담보법과는 달리, 「유통에서 제외된」 재산 및 일신전속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담보목적물 대상으로 규정
 - 「유통에서 제외된」 재산은 대륙붕·경제수역의 자원, 국방관련 재산 등을 말하며, 담보목적물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으로 1992년 담보법과 별 차이가 없음
- 질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저당권과 그 이외의 담보권으로 구별
 -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지만 그 이외의 담보권은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시하여야 함
 - 저당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1998년 저당법이 민법에 우선

o 저당법 주요 내용

- 저당권 목적물인 「유통되는」 부동산은 토지·동 부착물, 광구, 항공기, 선박, 인공위성, 재산복합체 등을 포함
- 기업활동에 이용되는 건조물, 설비 등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와 함께 또는 임차권을 동시에 설정하여야 함

나. 공증 및 국가등기

- 담보권설정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담보계약은 공증을 필하여야 함
 - 공증인은 종래의 국가공증인 외에 사설의 공증인도 인정되고 있음
- 1997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광구, 토지부착물, 재산복합체로서의 기업도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
 - 항공기, 선박 및 인공위성은 부동산등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 절차를 원용
 - 향후,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국가등기부가 작성되어 부동산 소유권, 그 외 물권 및 「제한적 권리」 즉, 지역권, 저당권, 신탁상의 권리, 임차권 등을 등기토록 할 예정
 -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담보권설정의 유효요건이나, 자동차·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의 효력요건이 아님
 -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공시제도도 점차 정비되고 있음
 - 일례로, 국가기술감독국 관할 건설기계, 자동차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담보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식 담보권자는 주주명부에 등록됨
 -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등기·등록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선순위담보권이 등록(등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한 선순위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다. 후순위 담보

- 목적물에 복수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며, 선순위담보권자의 채권이 변제된 후 후순위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됨
 - 후순위 담보의 설정은 선순위담보권자와의 계약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
 - 담보설정자는 후순위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재산에 설정된 모든 담보권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함

- 고지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

□ 저당법은 후순위저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

- 저당권의 순위는 국가등기부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며, 후순위저당의 효력은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계약에서 미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
-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기일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 실행이 가능

라. 담보목적물의 양도

□ 저당법은 담보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앞 양도나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당증서에 명시적으로 담보물의 양도를 허용하여야 함

-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 양도시에는 저당권자는 양도행위 무효를 주장하거나 기한전 담보권 실행이 가능
-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인수한 제3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

□ 저당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종래의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함

- 저당법은 새로이 저당증서제도를 도입

- 저당증서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표상하는 記名유가증권이며, 구체적으로는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와 담보권이 표상됨. 다만, 농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저당증서가 발행되지 않음. 저당증서는 이서에 의해 이전 가능

□ 민법은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유상·무상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당법은 법률·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피담보채무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하여 무상이용에 제공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음. 기간 초과시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마. 담보권 실행

- 1992년의 담보법은 재판절차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집행증서에 의한 실행을 인정함. 민법은 부동산·동산담보의 실행절차를 구별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재판의 실행을 제한함
- 민법은 차압 및 환가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부동산담보(저당)권도 재판에 의한 실행을 원칙으로 정함
 - 집행증서에 의한 실행도 가능하지만, 동 증서가 담보권 설정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실행의 원인이 발생한 후, 즉 채무불이행 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바, 이는 선순위담보권자, 담보목적물의 소유자 등 그 합의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의 소송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감안
 - 1997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담보권뿐만 아니라 일반채권 집행시에도 집행증서는 부양료채권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음
 - 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음
 - 담보목적물의 환가는 소송법에 따라 법률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동산에 관계없이 경매에 의함. 담보권자는 경매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담보권설정자와 합의를 거쳐 해당목적물을 인수 가능
 - 저당법에서는 경매형태를 집행관이 주재하는 입찰과 경매조직이 행하는 경매의 두가지 방법을 인정하였으며, 판결에 의하여 환가방법을 지정케 됨
 - 다만, 변제후 담보목적물 확보기회를 채무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채무자의 의견제기로 경매가 1년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
 - 목적물의 환가액이 피담보채무액에 못미치는 경우 담보권자는 잔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여타 재산집행에 참여하게 됨
 - 차압에 있어서도 집행증서에 의할 경우 채무불이행 등 저당권실행의 원인이 발생한 후로 한정. 후순위 저당권자가 집행증서 작성시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참여토록 함

바. 파산시 변제충당순서

- 1998년 파산법은 담보목적물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으나, 변제충당순서를 환경오염 등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에 이은 제 3순위로 정함

사. 비전형 담보

- 저당권 실행이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담보목적물의 환가가 경매에 한하는 등 실행절차에 문제가 많은 점, 그리로 파산시의 담보권의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면 계약에 근거한 비전형 담보가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큼
- 비전형담보는 기본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하며, 환매특약, 재매매 특약, 신탁계약 등의 형태로 행해짐
- 상사재판소도 비전형 담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3. 담보제도 시사점

- 재판 이외의 담보권 실행절차 제한, 파산시 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 훼손 등 러시아 담보제도의 기본 문제점은, 러시아 담보법이 채권자보다는 폭리적 계약으로부터 일반시민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동경사무소 제공
선임조사역 오 은상(☎02-3779-6644)
E-mail : oes@koreaexim.go.kr